

경운대학교 내부감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내부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감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·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교내 각종 업무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의 종류 및 분류) ① 내부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는 정기감사,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 정기감사는 매년 정례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.

③ 특별감사는 특정한 부서 또는 업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.

④ 일상감사는 각 부서의 업무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, 파악하여 그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,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.

제3조(감사시기) ① 정기감사는 우리대학교 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5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감사는 총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③ 일상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중복감사의 지양) 외부 및 자체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감사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감사반 편성)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시 내부감사반을 편성 할 수 있으며, 총장은 감사반원중 감사반장을 지명한다.

② 정기감사나 특별감사를 실시할 경우는 대상업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교직원 중에서 감사반을 편성 할 수 있다.

제5조의1(감사운영위원회) ① 내부감사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
2. 감사결과 처분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총장이 부의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
4.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감사실시)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
2. 감사대상 부서
3.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
4. 감사실시 방법
5. 감사시기 및 기간
6. 감사요원
7.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

② 감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.

제7조(감사방법) 감사는 피감사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서면감사를 하거나 피감사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,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다.

제8조(감사결과의 보고)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사보고서 내용) ①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한다.

1. 감사실시 기간
2. 감사범위
3. 감사대상 부서명
4. 감사인 명단
5.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의견
6. 건의사항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 보고서는 위 제1항의 사항에 구애받지 아니한다.

제10조(감사결과의 처리) ① 총장은 감사결과 행·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피감사 부서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피감사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감사결과 교직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·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개선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(피감사부서의 이의 신청) ①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해당 교직원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그 감사결과 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.(별지1호 서식)

② 이의 신청은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비밀의 유지) 감사에 종사한 교직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현재 실시 중인 감사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